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41호 2016. 6. 15 (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6 - 55호 도로명주소 고시 2
- 거창군 고시 제2016 - 56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변경) 고시 3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6 - 631호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4
- 거창군 공고 제2016 - 635호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43
- 거창군 공고 제2016 - 637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9

회 람									
--------	--	--	--	--	--	--	--	--	--

거창군 고시 제2016 - 5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6. 10.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5길 9-26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변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과수원 조성)
2. 사업내역

(단위:천원)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개간 용도	사업 예정 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신청 면적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웅양면 군암리 산149-4번지	98,952	4,427	과수원 조성	2016.1.22 ~ 2016.5.31	2016.1.22 ~ 2016.12.31	웅양면 구수길 203-4	김 은 주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055-940-3543)

2016년 06월 08일

거 창 군 수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조례 안 입법예고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거창군수

1. 조 례 명 :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거창군 지역의 대표특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권리화 능동적 대응 거창한우의 특허청 등재로 거창한우 보호 및 농가의 소득창출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거창한우 품질관리 및 인증(안 제1조 ~ 제8조)
- 주제별역할 및 증명표장 운영관리(안 제9조~제21조)
-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사용 및 품질관리규정(안 제22조~제28조)

4. 입법예고기간 : 2016. 6. 13. ~ 2016. 7. 4.

5.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운영 조례 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014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5-940-8133, 팩스 940-8119 ,이메일 su8279@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내수면담당 **【☎(055)940-813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한우의 품질 및 거창군이 소유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하“증명표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2. “지리적표시 증명표장권”이란 거창군이 「상표법」 제3조의3 및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증명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4의2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4. “거창한우”란 거창군 관내 농장에서 생산된 한우로서 거창군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부합되게 관리 생산되어 출하된 한우를 말한다.

제2장 거창한우 품질관리 및 인증

제3조(품질 고급화) ①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은 거창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생산 및 관리를 최대한 통일시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제1항에 따라 거창한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단체(이하“생산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브랜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는 브랜드 차별화를 위하여 제1항에 관한 내부 규약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최소 생산기반 확보) ①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거창한우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거창한우를 원료로 가공·유통하는 시설을 갖춘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거창한우 유통사업단(이하“유통사업단”이라 한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거창군·생산자단체·유통사업단 등은 거창한우가 브랜드로 가치를 인정받고, 그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기반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유통사업단은 상시 2,000kg 이상의 거창한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를 통해 한우 생산 포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안정적인 물량공급) ① 생산자 단체 및 유통사업단은 안정적인 물량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가조직화를 통한 참여농가 확대 등 규모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는 브랜드제품 유통에 따른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창한우를 유통사업단에 출하 하여야 한다.

제6조(브랜드 제품 요건) 거창한우 브랜드 제품을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제품을 유통할 수 없다.

제7조(준수사항) 거창한우의 위생·안전성 확보로 소비시장을 차별화 하고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산자 단체 또는 유통사업단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산환경의 쾌적성 유지
2. 기간 준수 등 의약품 안전사용
3. 한우의 생산·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기록·관리
4. 냉장유통체계에 의한 수송과 보관

제8조(유통사업단 지원·육성) ① 군수는 군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유통사업단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통사업단의 원료구입, 경영, 홍보, 유통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주체별 역할

제9조(군수) 군수는 거창한우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유통사업단) ① 유통사업단은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단은 차별화된 전략·기반구축 등을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육성해야 하며, 브랜드 관련 제반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유통사업단은 연1회 재무제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경영자료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생산자 단체) ① 생산자 단체는 유통사업단에 적극 참여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거창한우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 단체는 군수와 유통사업단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장 증명표장 운영관리

제12조(증명표장 운영 및 승인) 지리적표시증명표장권 운영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증명표장 사용심사) 지리적표시증명표장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한우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 ① 증명표장 사용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하며, 군수의 농산물 유통정책 자문에 임한다.

1. “거창한우” 증명표장 사용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거창한우”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증명표장의 사용 범위) 증명표장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한우 유통사업단, 전문판매점, 전문식당 등
2. 거창한우 지정점의 홍보용 광고물 제작 및 공공장소 홍보물
3. 거창한우 홈페이지 및 관련 사이트
4. 거창한우 제품용기, 포장상자, 포장가방 및 포장용지

제18조(지정 및 사용책임) ① 증명표장 사용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② 증명표장 사용자는 거창한우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증명표장 사용자는 자기가 사용한 증명표장표시에 대하여 제2항의 관리책임을 지며,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증명표장사용의 중지·지정취소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군수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심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증명표장사용권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증명표장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관련법규 위반으로 영업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브랜드사용자가 거창한우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증명표장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증명표장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무상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 관리) ① 군수는 증명표장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명표장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요구 하거나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증명표장사용자가 유통과정에서 변질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사업단으로 하여금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증명표장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용기 등에 증명표장을 임의 사용하거나 변형 또는 허위표시하여 거창한우 브랜드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거창한우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와 지명도 정착을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사용

제22조(지리적표시증명표장을사용하는자) ①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은 조합법인 및 소속단체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가 동 증명표장의 사용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용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②조합법인 가입은 거창군 내에서 한우를 생산하는 자만이 가능하며, 거창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한우를 생산하는 자의 경우는 가입을 불허한다.

③조합법인에 가입된 자가 사용을 희망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사용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④지리적표시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정관, 자체 관리기준 등은 물론, 조합법인의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지리적표시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기재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생산규모 및 연간 출하량

제23조(품질관리) ①조합원 및 단체조합원 소속 생산(제조 또는 가공)자는 지리적표시 상품의 품질적 특성의 유지를 위한 ‘자체관리기준’과 ‘유지관리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한우상품의 특정품질 또는 명성, 이러한 특성 등과 관련된 거창군지역의 지리적 환경요인, 지리적표시대상지역, 품질 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품질 등의 유지관리방안은 본 정관의 부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부속서는 정관의 일부로 보며,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4조(지리적표시증명표장 사용 위반자에 대한 제재사항) ①지리적표시증명표장 사용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사용에 대한 위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표시정지, 표시금지, 제품회수, 표시삭제 등의 행위를 취한다.

1. 표시정지: 다음 각호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개월~3개월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표시정지를 명한다.

가. 유해물질(중금속허용기준 등)이 관련규정의 허용기준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나. 표시품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다. 표시품의 표시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2. 표시금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사용을 2년 동안 금지시킨다. 표시금지자가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대상지역 외에서 생산된 한우를 사용하였을 경우

나. 대상지역 외에서 생산된 한우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다. 등록품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라. 등록품의 등급기준에 미달한 경우

마. 등록품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제품회수, 표시삭제

가. 표시정지나 금지된 제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

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 하에 표시사항을 지우거나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 후 판매

②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을 무단 사용 하였을 경우에는 무단 사용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상표법 등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한다.

제6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품질관리규정

제25조(품질관리규정) 거창한우 지리적표시증명표장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첨 제1호문서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26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별도의 운영세칙이 없는 경우 규칙을 참고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

2. 제정이유

- 거창군 지역의 대표특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권리화 능동적 대응 거창한우의 특허청 등재로 거창한우 보호 및 농가의 소득창출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분야별 업무(안 제6조 ~ 제8조)
- 심사기준(안 제15조)
- 인증 및 사용권 부여(안 제17조)

4. 입법예고기간 : 2016. 6. 13. ~ 2016. 7. 4.

5.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014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5-940-8133**, 팩스 940-8119 ,이메일 **su8279@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내수면담당 **☎(055)940-813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거창한우 브랜드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거창한우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고품질 한우를 유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거창한우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축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당연직 위원은 거창축산업협동조합장, 전국한우협회거창군지부장, 축산내수면담당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림수산축산사업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로 한다.

제3조 【위원회 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한다.

제4조 【거창한우의 정의】

거창관내 농장에서 생산된 한우로서 본 품질관리규정에 부합되게 관리 생산된 한우 중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한우

거창관내 농장에서 사육된 한우로서 본 품질관리규정에 부합되고 거창에서 12개월이상 관리 사육되어 출하된 거창한우 중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한우

구분	암소	거세우
등급	현행 1등급이상	현행 1등급이상
출하연령	25 ~ 80개월	28 ~ 32개월
입식(거세)		4 ~ 8개월
사료	지정된사료	지정된 사료, 사양프로그램

제5조 【관리주체의 구분】

거창한우브랜드사업과 관련된 생산 및 유통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명표장관리주체 : 거창군수
2. 생산관리주체 : 전국한우협회 거창군지부

3. 유통관리주체 : 거창축산업협동조합장

제6조 【증명표장관리주체 업무】

증명표장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리하며, 연중 1회 이상 유통관리주체에 대한 표장사용 적합여부를 현장 점검하여야 한다.

1. 증명표장의 등록 및 관리
2. 증명표장의 사용기간 연장
3. 증명표장의 불법 사용에 대한 법적대응

제7조 【생산관리주체 업무】

생산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리하며, 연중 1회 이상 생산농가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품종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생산요건 관련사항
2. 하자육에 대한 관련사항
3. 기준 미달농가 유통주체 통보하여 브랜드유통 미연방지

제8조 【유통관리주체 업무】

유통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리하며, 연중 1회 이상 유통거래처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거래처별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유통거래처 발굴 및 공급계약
2. 유통대금의 정산
3. 유통관련 채권확보
4. 거창한우 홍보 및 브랜드관리
5. 유통물량 출하배정

제9조 【재배농가 참여자격】

거창한우 브랜드 참여농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거창군 관내에서 생산된 한우를 연중 출하 가능한 농가.
2. 생산관리주체의 관리 및 기술지도에 따를 수 있는 농가.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한우 브랜드사업에 참여 신청한 농가

제10조 【상표사용 소비지 유통 판매점 요건】

거창한우 브랜드를 부착한 한우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거창한우증명서의 게시, 등급표시 및 농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 등을 이행하고 공정한 판매가 가능한 판매점.
2. 거창한우 외 한우를 취급하지 않거나 타제품과 구획을 확실히 할 것을 약속한 업체

제11조 【브랜드관리운영비의 조달 및 사용】

거창한우(애우) 브랜드 참여농가는 사업연도 예산에 따른 운영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운영비조달 : 애우 출하시 1두당 20,000원 공제 적립
2. 운영비사용
 - 1) 하자육(근출혈 등) 보상금 : 농가10%, 운영비90%부담
 - 2) 브랜드관련 홍보 및 유통관련비용

제12조 【생산기준】

거창한우는 다음 각 호의 생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산 단계별 관리
 - 가. 사육
 - 1) 거창한우는 거창에서 12개월 이상 사육된 한우로 하며 사육시 제 13조 생산 관리주체가 선정한 전용사료를 급여한 한우로 한다.
 - 2) 거창한우는 사육단계에 생산 관리주체가 정하는 관리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생산 관리 주체는 사육농가로 하여금 관리요령을 농가에 교육하고 사육시 개체 구분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거창한우는 사육단계의 친환경 한우(haccp, 무항생제)생산 기준을 따른다.
 - 나. 출하
 - 1) 거창한우의 출하는 위 사육단계에서 거창한우에 부합하는 개체만을 출하한다.
 - 2) 출하 시 등급구분 등은 정부의 축산물 등급기준에 따른다.
 - 3) 생산농가의 출하는 유통 사업단의 출하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단이 원하는 출하 계획에 따라야 한다.
 - 4) 유통사업단은 농가에 대하여 출하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교육하며 출하후 농가가 원하는 개체성적등 각종 출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질병관리

가. 거창한우는 구제역 백신등 정부의 가축질병 예방 및 방제를 위한 조치를 한다.

나. 거창한우는 사육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 및 그에 따른 불가피한 항생제 사용등을 최소화 하기위한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3. 출하 전 2회 이상의 초음파 등급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사양관리 개선 및 출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13조 【사료선정】

생산관리주체는 다음해 개시 전까지 거창한우 생산을 위한 전용사료를 선정하여 농가에 홍보한다.

제14조 【증명표장 사용신청】

1. 증명표장을 가공제품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명표장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농수축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최근 1년간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별 검사성적서나 농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서류

나. 품질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공무원 등 관계자는 관계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 생산관리기준 및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증 등을 위한 심사기준】

1. 심사기준은 별표 1의 통합심사기준표와 같다.

2.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

나.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2 이하일 것

다.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2 이상일 것

제16조 【안정성 기준】

「농수축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증 및 사용권부여】

1. 군수는 증명표장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증명표장 사용권 부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용권 부여서를 발급할 때에는 사용권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증품목 등의 기록·관리】

1. 증명표장의 인증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증명표장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증명표장 인증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유통관리주체의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보고】

1. 생산 및 유통관리주체는 증명표장 사용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품목에 증명표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유통관리주체는 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증명표장 인증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 상황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통합 심사기준표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1. 브랜드조직 및 자질	가. 브랜드 조직·운영 역력이 5년 이상으로 브랜드 기본요건인 품종·전용사료·사양관리가 통일되고 고품질 축산물브랜드의 생산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브랜드 조직·운영 역력이 3년 이상으로 브랜드 기본요건인 품종·전용사료·사양관리가 통일되고 고품질 축산물브랜드의 생산의지가 확고한 경우 ※ 번식축은 전용사료(사료통일)에서 제외 다. 브랜드 조직·운영 역력이 1년 이상으로 브랜드 기본요건인 품종·전용사료·사양관리가 통일되고 고품질 축산물브랜드의 생산의지가 확고한 경우 ※ 번식축은 전용사료(사료통일)에서 제외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 공통사항 : 번식축은 전용사료(사료통일)에서 제외하며 사료통일은 성분통일을 말함	수 우 미 양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80%이상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75%이상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70%이상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수 우 미 양
3.대외신용도	가.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고 사용한 역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나.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고 사용한 역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출원중인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	수 우 미 양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4.사육규모	<p>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p> <p>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p> <p>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p> <p>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p>	<p>수</p> <p>우</p> <p>미</p> <p>양</p>
5.축사(생산지) 입지	<p>가.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지로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브랜드 참여농가중 가축에게 지하수를 급여하는 농가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1년 1회 반드시 받거나 공인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함)</p> <p>나.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지역으로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브랜드 참여농가 중 가축에게 지하수를 급여하는 농가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1년 1회 반드시 받거나 공인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함)</p> <p>다.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가능한 경우(브랜드 참여농가중 가축에게 지하수를 급여하는 농가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1년 1회 반드시 받거나 공인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함)</p> <p>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p>	<p>수</p> <p>우</p> <p>미</p> <p>양</p>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6.사양기술 수준	<p>가. 브랜드에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브랜드경영체내 기술지도 요원 중 2인 이상 축산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 면허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p> <p>나. 브랜드에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브랜드경영체내 기술지도 요원중 2인 이상 축산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인공수정사 면허증 포함) 또는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p> <p>다. 브랜드에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브랜드경영체내 기술지도 요원 중 2인 이상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축산관련 전문기술교육기관의 교육수료증을 소지한 경우</p> <p>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p> <p>※ 공통사항 : 외부기관(컨설팅업체)에 계약위탁 할 수 있다.</p>	<p>수</p> <p>우</p> <p>미</p> <p>양</p>
7.사육시설 및 기자재	<p>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참여농가 90%이상이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 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가축을 친환경적으로 사육하여야 함</p> <p>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고 참여농가 80%이상이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 당 적정 가축사육 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가축을 친환경적으로 사육하여야 함</p> <p>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70% 이상 이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 적 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가축 을 친환경적으로 사육하여야 함</p> <p>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p>	<p>수</p> <p>우</p> <p>미</p> <p>양</p>
8.자체품질 관리수준	<p>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유통까지 생산이력이 관리되는 경우</p> <p>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부분육 가공)까지 생 산이력이 관리되는 경우</p> <p>다.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가공 (부분육 가공)이 되나 생산이력의 관리가 미흡한 경우</p> <p>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p>	<p>수</p> <p>우</p> <p>미</p> <p>양</p>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9.품질관리 열 의 도	<p>가.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매년 1회 V 이상(최근 3년간)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p> <p>나.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p> <p>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p> <p>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p>	<p>수</p> <p>우</p> <p>미</p> <p>양</p>
10.판매처 확 보	<p>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 브랜드상표로 생산물량의 80%이상을 판매 하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 브랜드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p> <p>나.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 브랜드상표로 생산물량의 70%이상을 판매 하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 브랜드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p> <p>다.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 브랜드상표로 생산물량의 60%이상을 판매 하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 브랜드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p> <p>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p>	<p>수</p> <p>우</p> <p>미</p> <p>양</p>
11. 그 밖에 (도축가공 업 체의 경우)	<p>※ 10개 심사항목 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대상은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등으로 반드시 축산업등록이 된 도내 5농가 이상이 브랜드에 참여해야 한다. 2. 브랜드 신청시 해당 브랜드 이름으로 생산, 도축, 가공, 유통 중이어야 한다. 3.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4. 주요 사업장(도축장·가공장·부분육 가공 및 포장 등) 및 주생산지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별표 2]

축산물의 생산관리기준

구 분	생 산 관 리 기 준
축 산 물	<p>생산자 등 공 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기간 중에 축사 및 사육조건,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등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축에게 지하수를 급여하는 농가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1년 1회 받거나 공인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p>브랜드 등 사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내에서 지역, 사료 및 사양관리 등을 달리하여 생산한 축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G마크축산물의 생산 과정과 상품명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명 등은 상표등록 하여야 한다. ○ 도내에서 축산물의 생산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의 경우, 도축장 및 가공장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에 맞게 갖추어야 하며, 각각 1개소만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각의 경우 가공장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지육가공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 사업단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회계 등을 별도로 정산하여야 하고, 참여농가와 계약서를 의무화하며, 계약내용에는 브랜드로의 전 두수 출하, 규약 이행 및 위반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p>생산 등 사양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농가의 사육현황, 사양관리지도, 방역지도 등의 업무는 브랜드 주체(사업단)에서 기술지도 요원에게 별도로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농가에 대한 관리기록대장을 사업단에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 참여농가는 사육관리대장(방역관리대장 포함)을 갖추어야 하며, 항생제, 소독제, 주사기 등 방역약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한·육우는 거세우를 브랜드로 생산하여야 한다. ○ 한·육우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시행하여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생산자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소 사육기간은 브랜드 참여농가에서 12월 이상 사육하여야 한다.
<p>축산물 가공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하며, 주된 원료는 G마크 축산물 또는 G마크 인증기준에 준하는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는 농가(5농가 이상)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법인(작목반)명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1. 위 본인은 「거창군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증명표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군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이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추천서

- 법인·작목반명 :
- 대표자 성명 :
- 추천 내용 :
- 추천 사유 :

「거창군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표장의 사용신청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증명표장 사용권 부여서

증명표장 사용권의 부여번호			
사 용 권 자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 또는 작목반		
	주 소	(전화)	
사 용 내 용	대상품목		
	승인물량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거창군 거창한우 품질 및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표장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거창군수 직인</p>			

증명표장 사용권 부여대장

인련 번호	인증품목	승인 물량	시·군	주 소	경영체명	대표자	성별	인증번호	인증기간	전화번호

증명표장 인증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

사용권자	성명 또는 대표자				법인 또는 작목반명					
	주 소	(전화:)			생년월일					
사용 내용	대상품목				부여번호					
					승인물량					
	사용기간				포장재 제작처					
연월일	생산량		출하상황		스티커·포장재			확 인		
	품목명	물량 (톤)	물량 (톤) 금액 (천원)	출하처	입수 또는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	사용 권자	확인자
						사용	멸실			
					매	매	매	매		

증명표장 인증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보고

사용권자			출하내역				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			
사용권 부여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 또는 직목번호)	주소	품목	물량 (톤)	금액 (천원)	출하처	확보 (A)	사용량(B)		재고량 (A-B)
								사용	멸실	

거창한우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관리 계획서

1.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1) 계획의 수립

- 관련단체는 자체품질기준에 맞는 거창한우 생산을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의결

- 품질관리계획은 이사회(또는 단체)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

3) 보고

- 품질관리계획이 이사회에서 확정되며, 그 결과를 즉시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한다.

4) 포함사항

- 품질관리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회원의 구성 상황 및 증감내역
 - 품질관리를 위한 이사회 및 조사원 현황 및 변동내역
 - 거창한우의 생산계획 및 증가내역
 - 품질관리 실적 및 계획
 - 표시등록 추진성과
 - 품질관리 인력현황
 -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 거창한우의 판매 방법별 · 판매처별 판매 실적
 - 거창한우의 사후관리 실적
 - 자체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실적 및 계획
 - 문제점 및 대책

2.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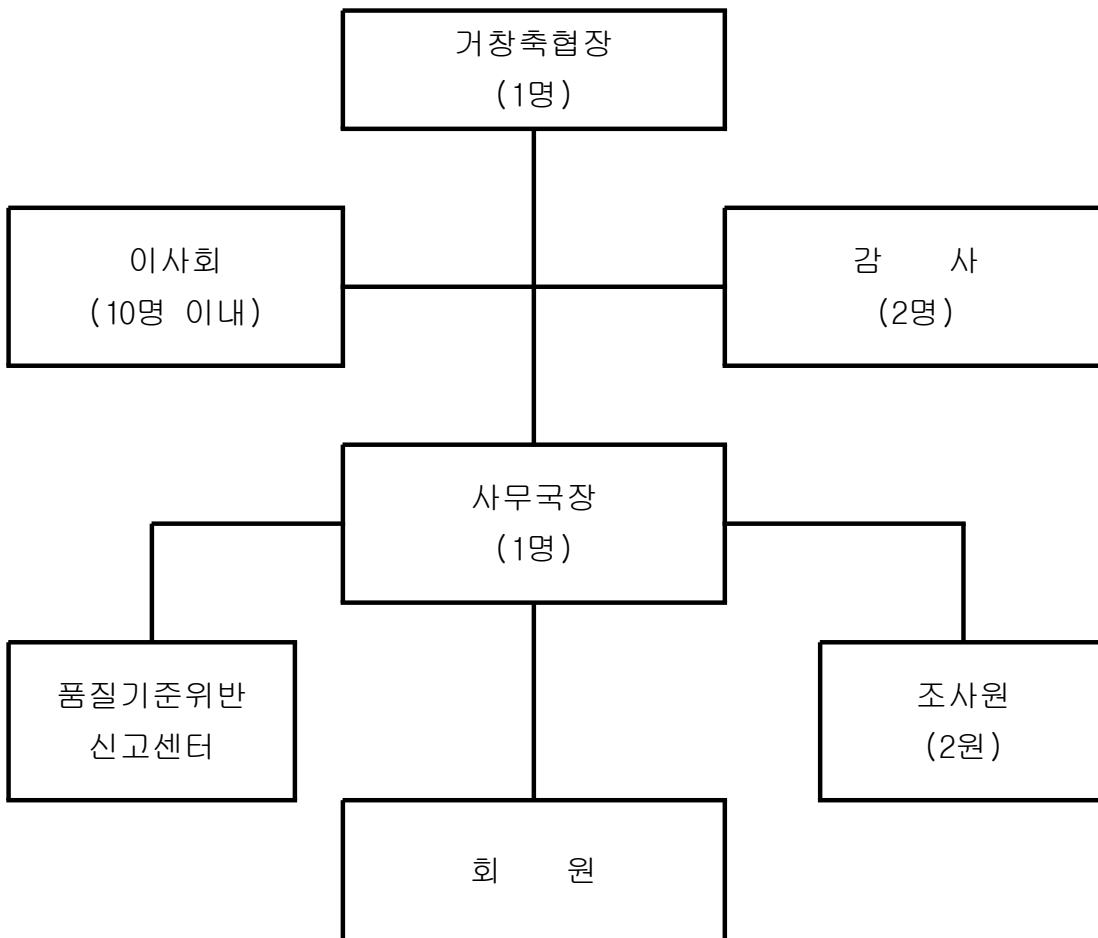
1) 품질관리 관련 인력

(표-50) 품질관리 인적구성

구분	거창축협장	이사	감사	사무국장	조사원
인원수	1	10명 이내	2	1	2

2) 품질관리 조직도

(그림-5) 품질관리 조직도



3) 임무

○ 거창한우의 품질관리를 위한 거창축협장, 이사회, 감사, 사무국장, 조사원, 회원(생산자)의 임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 대표이사

- 거창한우를 대표한다.
- 품질관리계획안 수립 및 이사회 상정
- 회원 및 관계기관에 확정된 품질관리계획 통보
- 품질조사 결과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심의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
- 부정품의 조사계획안 수립
- 품질조사원의 임명

○ 이사회

- 품질조사계획안 심의 · 확정
- 품질조사결과 및 조치방법의 심의
- 이의신청 및 표시정지 자에 대한 재허용 여부 심의
- 품질관리교육 계획 결정
- 거창한우의 홍보 및 판촉활동
- 품질조사원 추천

○ 감사

- 감사는 거창한우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사 업무수행

○ 사무국장

- 법인운영(총무, 회계, 기획, 교육 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

○ 품질조사원

- 거창한우의 품질조사 및 원산지 관리
- 조사시료 수거 및 분석기관 분석의뢰
- 시정명령, 표시정지, 표시금지, 제명 등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회원 및 생산자

- 자체품질기준, 등급기준, 표시사항의 준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 준수
- 양식방법 등 준수
- 거창한우의 일자별 생산, 판매량 기록대장 비치
- 시료수거 및 관련 장부의 열람 협조
- 부정 거창한우에 대한 감시 및 신고
- 거창한우의 원산지 관리

○ 품질조사원의 자격 및 임명

- 품질조사원의 자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거창한우 생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한 자
 - 관련업무 또는 한우 생산, 수확 및 판매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한우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 품질조사원의 임명
 - 품질조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
 - 품질조사원은 '2명'을 임명· 운용한다.

○ 품질기준위반신고센터 설치 운영

- 축협 내에 품질기준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를 접수· 처리한다.

3. 품질관리 주체

1) 품질조사

- 거창한우의 품질조사는 유통주체(거창축협)이 총괄하여 실시한다.

2) 성분분석

- 성분분석은 국립축산과학원 또는 한국식품연구원,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축협중앙회식품연구소 등에 분석을 의뢰한다.

4. 조사항목

1) 거창한우 생산과정 조사

- 종묘 및 재배
 - 거창한우 생산과정에서 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 도축과정
 - 거창한우 도축과정에서 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 저장 및 선별과정
 - 거창한우 저장 및 선별과정에서 생산자 및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2) 거창한우의 품질조사

- 자체품질기준과 식품위생법 등의 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품종, 등급 및 선별, 포장 기준의 준수 여부
- 원산지 조사를 통한 타 지역 한우의 유입 여부
- 의무표시사항 및 표시금지사항의 표시 등 표시의 적절성 여부

5. 조사기준

1) 생산과정 조사

-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거창한우 도축기준을 적용한다.

2) 품질조사

-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등급 및 포장기준을 적용한다.

3) 표시사항 조사

- 품질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적용한다.

6. 조사방법 및 절차

1) 거창한우 사육단계 조사

- 거창한우 사육과정에서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
- 조사 시기 : 연중 1회 이상
- 조사방법 : 조사대상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관련서식에 의거 자체기준에 적합 여부를 재배기록에 통해 확인하거나 청취조사

2) 거창한우 저장단계 조사

- 조사내용
 - 거창한우의 저장과정에서 자체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
 - 도축 후 저장까지 과정에서 생산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섞이지 않는지 조사
- 조사 시기 : 거창한우 저장 후 선별 전 과정에서 연중 1회 이상 조사

○ 조사방법

- 조사대상 농가에 출장하여 관련서식에 의거 자체품질기준에 적합 여부를 조사

3) 거창한우 선별단계 조사

○ 조사내용

- 저장 후 판매하기 위해 선별과정 중인 거창한우를 대상으로 선별과정의 적정성을 조사

○ 조사 시기 : 거창한우 선별과정 동안 연중 1회 이상 조사

○ 조사방법

- 거창군 내의 선별시설에 현지 출장하여 관련서식에 의거 자체기준에 적합여부를 조사

4) 판매단계 조사

○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최종 생산물의 등급, 포장규격 및 표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

○ 조사 시기 : 최종선별, 포장 후 판매 이전

○ 조사방법

- 연중 1회 이상조사

5) 유통단계 조사

○ 전국의 도·소매시장 기타 유통시장에서 판매(통신판매 포함) 중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

○ 조사 시기 : 거창한우 유통이 많은 주 수확기를 중심으로 연중

○ 조사방법

- 거창군과 연계하여 거창군 현지 시장 및 전국의 도·소매시장, 기타 유통 장소에서 판매(통신판매 포함) 중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연중 1회이상 실시한다.

6) 조사표본수

(표-51) 조사 표본 수

모집단의 크기	10농가 이하	11~20 농가	21~50 농가	51~100 농가	101 농가 이상
조사표본수	1농가 이상	2농가 이상	5농가 이상	10농가 이상	전체의 1% 이상

- 작목반별로 다음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재배 및 수확과정을 조사한다.

8) 조사기록의 관리

- 축협은 품질조사 관련기록(조사실적 대장, 조사표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이나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축협조합장은 품질관리계획 수립 시 전년도 품질조사기록의 조사 성적을 참고하여야 한다.

7. 품질 및 잔류 중금속 검사를 위한 시료수거 및 분석의뢰

1) 시료의 수거

- 조사원은 거창한우의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협조를 얻어 다음 절차에 의거 수행해야 한다.
- 관계자입회
 - 조사원이 자체품질기준에 따라 품질조사, 잔류 중금속검사 및 이의 신청조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생산자, 판매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 시료수거방법
 - 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수거, 현지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수거하여야 한다.
- 시료수거량
 - 분석 기관에서 필요로 한 시료물량의 2배를 수거하여 절반은 분석의뢰용으로, 나머지 절반은 축협 보관용으로 사용한다.
- 시료수거용기

- 시료의 수거·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상해 및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합한 용기를 사용한다.

○ 상호날인

- 축협 보관용과 분석의뢰용 각 1점씩을 수거하여 포장을 손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원과 입회자가 각각의 수거의 수거, 시료에 상호 날인한다.

2) 시료수거 서류작성

- 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관련서식에 의거 분석의뢰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1부는 축협에 보관하고, 1부는 분석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한다.

3) 시료의 분석의뢰

- 수거한 시료는 수거 당시의 성상 등이 변화가 적도록 조치하고, 변질 등에 유의하여 수거 즉시 분석의뢰서와 함께 분석 기관에 송부한다.
- 시료의 송부과정 중에 오염이나 변질, 변패, 파손 등이 없도록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급적 축협의 책임자가 직접 지참 출장·의뢰한다.

4) 시료의 보관

- 축협에 시료를 보관할 때에는 분석의뢰서 사본을 보관용 시료에 첨부한 후, 내용물이 변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5) 조사비용

- 품질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 분석비용은 축협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 이의신청용, 참고용 등 개별적인 용도로 분석할 경우에는 그 분석비용은 분석의뢰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8. 조사결과 조치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로써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2건 이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긴 처분기간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 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시정명령, 표시정지, 제명 등 3가지로 한다.

(표-52)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기준

처분대상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체품질기준 생육 기준 위반	표시정지 1년	제명	-
자체품질기준 판매 기준 위반	표시정지 1년	제명	-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 초과	표시정지 1년	제명	-
원산지 위반	제명	-	-
허위표시	시정명령	제명	-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지리적 특산품의 생산이 곤란한 자	제명	-	-

-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회원에게 직접 통보한다.

3) 제품회수, 표시삭제

- 표시정지 조치된 거창한우 부적합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한다.
- 표시정지품에 대한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할 경우에는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또는 용기(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만 그 표시를 삭제한다.

4) 조사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 품질조사, 제품분석 결과, 시정명령, 표시정지 및 제명 조치된 사항 등은 즉시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통보한다.
- 해당제품의 생산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및 결과 통보를 완료한다.

5) 조치결과보고

- 품질조사 및 분석연월일, 조사장소, 생산자명, 위반내역, 조치결과 등은 즉시 거창군에 보고한다.

6) 처분조치 불응자에 대한 조치

- 회원이 축협이 처분조치에 불응할 경우, 축협은 불응자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표시 사용을 5년간 금지시킨다.

9. 기타사항

1)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 축협은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관내 유력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 자문위원회 운영

- 시설, 홍보, 행사, 교육, 판매, 수출, 자금, 재배, 가공 기술개발 및 보급 등 다각적인 지원 협조체계의 구축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 구성

- 거창군수,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전국한우협회 거창군지부장, 거창군축산업협동조합장

○ 역할

- 거창군수

지리적 특산품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홍보, 판매, 자금 등에 다각적인 지도와 지원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품질이 우수한 거창한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교육, 보급 그리고 지원

- 전국한우협회 거창군지부장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관리 지원

- 거창군축산업협동조합장

특산품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유통단계 조사에 지원을 하고, 지리적표시제도 운영을 위한 자금지원 등

3) 합동조사팀 운영

- 합동조사팀은 유통단계에서의 지리적 특산품에 대한 품질조사 및 지리적표시의 부정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 구성
 - 자문위원의 소속기관의 거창한우 관련 실무자들로 구성한다.

4)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 축협은 회원 및 관계 담당자에게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표시제, 안정성, 원산지 관리, 품질향상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5) 판매 활성화 방안 강구

축협은 특산품인 거창한우의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신문, 잡지, 텔레비전, 안내책자,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

6) 품질관리계획의 개정 및 보완

- 지리적표시 제도나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이의 내용에 따라 본 품질관리계획을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 본 품질관리계획의 개정·보완은 등록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 월 13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2. 제정이유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운영·관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구성 : 25조

나. 주요내용

- 목적, 명칭 및 위치
- 업무 및 기능
-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운영시간
- 입장료, 입장 및 행위제한
- 시설 사용료, 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 운영 및 위탁관리

4. 입법예고기간 : 2016. 06. 13. ~ 2016. 7. 3.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산림녹지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670-807] 에게 서면이나 메일 (csh02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055)940-346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영상실, 전시실 교육세미나실, 기획전시실, 게스트하우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시관 등을 운영 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입장료”란 생태교육장 전시관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부대시설”이란 생태교육시설과 관리편의시설에 종속된 그 밖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생태교육장은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325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교육장의 역할

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보존·전시하는 역사·문화 공간의 역할
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 시설의 역할
4. 시설의 대여 등 사용과 수익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전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공 등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전시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전시관 게시판 및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관람 및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 ① 전시관 입장료는 별표 1로 하고,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전시관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국가 또는 거창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9. 거창 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군민으로 인정하는 사람
10.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군수와 사업협회가 완료된 경우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전시관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료 등) ① 전시관 및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전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시설 사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0:00까지로 한다.

⑤ 전시관 3층 (교육세미나실)의 사용 기간은 사용 당일 10: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제11조(시설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요금표 등의 게시) 군수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사용 예약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2.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전액
3.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80퍼센트
4.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5. 사용 당일 취소하거나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 미반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다.

③ 반환은 예약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의 긴급 개선·보수 시
3.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 경우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6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에 따른 세부사항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거창

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 및 위탁) ① 전시관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 현황, 사업계획서, 각서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위·수탁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사용료 결정) 위탁 사용료는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비품 등을 잃어버릴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이행사항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에게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전시관 운영·관리에 따른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세입조치)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전시관 및 게스트하우스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관리 시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 (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입장료 (관람료)						비 고
	어 른		청 소 년·군 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전 시 관 (통합입장료)	2,000	1,000	1,000	500	500	300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 하 군인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체 : 20명 이상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제7조 관련)

1. 전시관

	20cm	
6cm 편 철 부 분	NO. _____ 전시관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 소 년(" 1,500/ " 1,000) ·어 린 이(" 1,000/ " 500) 년 월 일 거창군수	전시관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 소 년(" 1,500/ " 1,000) ·어 린 이(" 1,000/ " 500) 년 월 일 거창군수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cm	12cm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제10조 관련)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1층 (32.81 m ²)	1일	성수기	70,000원	4인 기준
			비수기	50,000원	
	2층 (30.82 m ²)	1일	성수기	70,000원	4인 기준
			비수기	50,000원	
교육 세미나실	3층 (81.55 m ²)	4시간	50,000원		방송·영상장비 냉,난방, 의자비치
		8시간	100,000원		
		1일	150,000원		

※ 초과사용료 부담기준

1. 숙박시설

-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 사용료의 20%
- 나. 1시간 초과 시 : 1일 사용료 전액
- 다. 기준인원 초과 : 1인당 5,000원

2. 교육세미나실

-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 사용료의 20%
- 나. 1시간 초과 시 : 사용료 전액

※ 이용시간

- 가.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0:00까지로 한다.
- 나. 전시관 3층(교육세미나실) : 당일 10: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1. 시설사용권(게스트 하우스)(제10조 관련)

<전 면>

6cm	편 철 부 분	NO. _____	절	사용권 NO. _____
		사용권(보관용)	취	게스트하우스 ○동 ○호
		【게스트하우스 ○동 ○호】	선	
		사용료 : 원		
		년 월 일		거창군수
		거창군수		※ 본사용권은 1회만 유효합니다.
		2cm 6cm 12cm		

<후 면>

6cm	※ 유의사항 ◦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홈페이지 : http://www . (Tel.)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배재로 2325 거창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절		취	편 철 부 분
		선			
	12cm		6cm		2cm

[별지 제3호서식]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사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 []에는 사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시설명

[] 게스트하우스, [] 교육세미나실,

사용인원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용료 감면사유

신청내용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용료를 감면받는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위·수탁 승인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시 설 명				
사용일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수 탁 조 건				
<p>「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붙임 : 1. 단체 및 개인 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각 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거창군수 귀하</p>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2. 개정이유 :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규정 신설함
(안 제3조제6항, 제4조제2항)
 - 군수와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노력,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 차별금지

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존속기한 삭제(안 제6조의2)

다. 규제일몰제 도입(안 제13조)

- 경쟁제한적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함.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건설과 **☎055-940-3532, Fax055-940-3529** 또는 메일 **la1007@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건설과 건설담당 **☎055-940-35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	--------

제출연월일	2016. 6. .
제 출 자	건설과장

1. 제안이유

-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규정 신설함
(안 제3조제6항, 제4조제2항)

- 군수와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노력,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 차별금지

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존속기한 삭제(안 제6조의2)

다. 규제일몰제 도입(안 제13조)

- 경쟁제한적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과 협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6. 15 ~ 2016. 7. 5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 및 반영여부 기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군에 주소를 둔 건설근로자 (이하 “지역건설근로자”라 한다)를 우선 고용하고,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이하 “지역건설기계”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제3항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 제3조제6항에 따른 군 발주 공사 참여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권장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노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건설 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신 설></p>	<p>제3조(군수의 책무)① ----- ----- ----- -----</p> <p>② ----- ----- -----</p> <p>③ ----- ----- -----</p> <p>④ ----- ----- -----</p> <p>⑤ ----- ----- -----</p> <p>⑥ <u>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군에 주소를 둔 건설근로자(이하 “지역건설근로자”라 한다)를 우선 고용하고,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지역건설기계”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p> <p>제 8조 (구성) ①~ ② (생략)</p> <p>③ 위원은 재무과장, <u>건설교통과장을</u>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 ----- -----</p> <p>② <u>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u></p> <p><삭 제></p> <p>③ ----- <u>건설과장</u> ----- ----- -----</p> <p>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 제3조제6항에 따른 군 발주 공사 참여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권장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노력 <p>제14조(시행규칙) ----- ----- -----</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차.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 나. (생략)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329호, 2015.5.18., 일부개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7.16.]